



의정부장암초 학생생활 규정



의정부장암초등학교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의정부장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의정부장암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1조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2조(기능)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 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6.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11.20.)

제 4조【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1절 교내 생활

제 5조【기본 품행 및 구성원의 의무】

제 6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 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 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10조【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여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1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교감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이성 간의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5.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2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와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 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 시간에는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상급 학년을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본교 교직원들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한다.

제 14조【용의 및 복장】 용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15조【학급내 봉사활동】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 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17조【소지 금지 물품】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 18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1.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9조【물건의 수거】

1.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2.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교는 학생이 아래와 같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차별적 언행,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 21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노력한다.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

제 22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학교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 23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정·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7일 내에 개정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2절 교외 생활

제 24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 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절 정보통신

제 26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 27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1.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②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③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④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예외의 경우]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

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

3. 제 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한다. (제 41조 훈육 6항 학생물품 분리 보관규정에 따른다.)
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5.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8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1.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 기기의 전원을 종료한 상태로 학생의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초·중등교육법」제20조의 5제 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②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③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④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예외의 경우】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5.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6.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절 학생자치 활동

제 29조【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 30조【학생 자치활동 조직】

1. 학교장은 학생 자치회, 취미별 동아리, 동아리활동 부서 등이 다양하게 조직되도록 지원한다.
2. 학생자치활동 부서 조직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한다.(임원을 선출해야하는 경우)

제 31조【학생 자치활동 운영】

1.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교사를 배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담당교사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3. 학생자치활동 부서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2조【학생 자치활동 의견 반영】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하며,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3조【학생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 3장 학생생활 지도

제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34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2절 생활 지도

제 35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수시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현장학습 시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현장학습 시 이름표를 부착하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겉옷 안쪽에 부착하거나 이름을 제외한 학교명, 연락처만 기재한다.

제 36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올바른 진로의식 형성과 자아발견을 돕기 위하여 전 교과에 걸쳐 진로에 관한 내용을 삽입 하여 지도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7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생활교육한다.

제 3절 학생 지도의 방식

제 38조【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39조【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조【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41조【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④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⑤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스마트기기, 수업부적합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정규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 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린 후 즉시 물품 분리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7.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42조【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② 성찰하는 글쓰기
 -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43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1.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민원면담실, 상담실, 학년연구실 등 교직원이 상주하는 장소)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3.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4.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5.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6.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 44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4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46조【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이의 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8조【기타 사항】 본 생활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

제 49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50조【구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제 5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절차】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
 - ② 위원이 해당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③ 위원이 해당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4. 제척, 기피, 회피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학교장은 대체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2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단,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회의를 거쳐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 53조【회의 소집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54조【사안 설명 및 조사】

1. 본 위원회는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담당 교사가 작성한

사안 경위서, 면담 의견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참고하며 학생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면담 의견서와 담임 의견서는 현장 진술로 대체 가능하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5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 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②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 ①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②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③ 조치 이행

제 56조【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5절 학생 생활교육

제 57조【생활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은 훈육, 훈계의 지도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사가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2. 교사는 체벌 대신 훈계, 훈육의 방법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다.
3. 교사가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제 58조【징계】 다음 제1항~제2항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2.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3. 징계의 종류
 - ① 학교 내의 봉사(운동장, 계단청소, 특별실, 화단, 교무실 청소 등)(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 ②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 ③ 특별교육 이수(총 30시간 이내)
 - ④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4. 징계의 결정
 - ① 징계는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 59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
 - ①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사회봉사
 - ①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④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 이수
 - ①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및 상담) 과정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④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⑤ 특별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 정지

-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④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 60조(징계사실의 공표금지)

-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 61조【심의 확정】

- 1. 생활교육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2. 학교장의 결재일의 익일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 4. 1회 이상의 포상을 받거나 학교 이미지를 드높인 학생은 생활교육에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생활교육의 하향 적용 가능)

제 62조【생활교육 내용 통보】생활교육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1. 생활교육결과 공지로 인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2. 생활교육이 확정되면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기회 및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을 보장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등을 안내한다.

제 63조【생활교육 학생 교사 응시】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하게 한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64조【생활교육 경감】

- 1. 학교장은 생활교육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성진로부장 및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생활교육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성진로 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 65조【생활교육 처리방법】

1. 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2. 생활교육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6조【생활교육 해제】 생활교육 해제 학생은 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67조【사후 지도】담임교사와 생활지도 교사는 생활교육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 6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자치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안을 작성한 다음 생활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69조【기타 규정】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특정 사안의 처리는 생활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며, 생활 지도상의 문제로 학교에서 내교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할 책임이 있다.

제 71조【학생포상】학생포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장은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해 각 부서별로 교육 활동 후 시상한다.

제 6절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72조(학업중단예방지원팀)

1.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의 구성과 운영은 및 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 73조(학업중단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①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②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 단,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것. 이에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제 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학생의 진로와 응시 시기를 고려하여 숙려제 운영 기간을 적용할 것(공고 예정일: 매년 2월, 6월)
- ③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④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속 3일 3회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⑤ 그 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 장이 판단한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②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④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⑤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숙려 기간은 주 단위로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②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 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 1항 제 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 4조【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 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를 지원할 수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걸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을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가,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학년말에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생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제 5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⑤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8조【공포 및 정보 공시】

1.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 9조【연수 및 교육】

1.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